

束草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5. 9. 19.

내 무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5년 9월 13일 속초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9월 13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4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내무위원회('95. 9. 19) 상정,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동운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시군조례·규칙 심의회 운영지침이 시행되어 『속초시 조례·규칙 심의회』가 설치, 운영됨에 따라
 - 속초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‘조례·규칙에 관한 심의·결정’ 기능을 『속초시조례·규칙심의회』로 이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제5호 『중요한 조례, 규칙, 훈령, 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』을 삭제함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- '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
- 본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"중요한 조례, 규칙, 훈령, 제정 개·폐"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그 기능을 "조례·규칙심의회"에 이임코져 하는 사항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(답변자 : 총무과장 김동운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속초시조례·규칙심의회 위원은 외부인으로 위촉 하는지?	○ 외부인 위촉은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와 같은 시장·부시장과 실과소장이 위원이 됨.

5. 討論 要旨 : 없 음

6. 修正案 要旨 : 없 음

7. 審査結果 : 原案 可決

8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
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

첨 부 :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9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『속초시조례·규칙심의회』가 설치, 운영됨에 따라

— 속초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"조례·규칙에 관한 심의·결정"기능을 『속초시조례·규칙심의회』로 이관코자함.

2. 주요골자

가.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제5호 『중요한 조례, 규칙, 훈령, 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』을 삭제함(안제3조제1항제5호)

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 ~ 제2조 (생략)		제1조 ~ 제2조 (현행과 같음)		
제3조 (결정사항) 1 ~ 4 (생략)		제3조 (결정사항) 1 ~ 4 (현행과 같음)		
5. 중요한 조례, 규칙, 훈령, 제정 개 ·		5. (삭 제)		
<u>폐에 관한 사항</u>				
6 ~ 30 (생략)		6 ~ 30 (현행과 같음)		
제4조 ~ 제9조 (생략)		제4조 ~ 제9조 (현행과 같음)		